

‘22년도 건설업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

I 목 적

- ☐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대해
 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*를 자체적으로 심사·확인토록 하여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
- * 건설업 중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·확인받는 제도

II 관련 규정

- ☐ 산업안전보건법 제 42 조제 1 항, 시행규칙 제 42 조제 5 항·제 6 항 및 제 47 조, 시행규칙 별표 11,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2 호(2020. 1. 7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)
 - ☐ 지정기준
 - 건설산업기본법 제 23 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 위 이내 건설업체 중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라 산정한 직전 3 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*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23 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 위 이내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 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이며,
- 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(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,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)에 따라 직전 3 년간(19 년, 20 년, 21 년)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(1.28)을 적용함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7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(영 별표 4 제 8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 1 명 이상을 포함하여 3 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 있고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 조제 1 항제 7 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 점 이상인 건설업체이고
- 해당 연도 8 월 1 일을 기준으로 직전 2 년간(‘20. 8. 1.~’22. 7. 31.)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어야 함

III 지정 결과

- ☐ (지정기간) ‘22. 8. 1. ~ ‘23. 7. 31.(1 년)
- ☐ (지정업체) 삼성엔지니어링(주) 등 24 개 건설업체

시공순위	건설업체명 (굵은 글씨: 2년 연속 선정 업체)
200위 이내 (24개사)	삼성엔지니어링(주), 제일건설(주), 우미건설(주), (주)부영주택, (주)반도건설, 신세계건설(주), 엘티삼보(주), 아이에스동서(주), (주)에이치제이중공업, (주)금성백조주택, (주)라인건설, (주)대광건설, (주)시티건설, (주)케이알산업, 동원건설산업(주), (주)보미건설, 경남기업(주), (주)서해종합건설, (주)대원, 대상건설(주), 동문건설(주), (주)대저건설, 동아건설산업(주), (주)모아종합건설

- ☐ (해 태) 지정 건설업체가 향후 1 년간(‘22.8.1.~’23.7.31.) 실착공하는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현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사·확인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·확인 은 면제
- ※ 지정기간(‘22.8.1.~’23.7.31.) 내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현장에 한해 안전보건공단의 확인 재개

IV 행정 사항

- **(대상통보)** 지정 건설업체 명단(24 개사)을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통보하고, 공단은 지정업체에 개별 통보

※ 행정처리 상 7.31 일 이전 결재를 시행하더라도 당해 연도 7.31 일까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지정업체에서 제외

- **사후관리**

- **지방관서**

- 지정 건설업체 시공현장에서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정기감독 등 실시
 - 공단의 모니터링 결과 이행관리 실태가 불량하다고 통보받은 현장에 대하여 지도·점검 실시

- **안전보건공단**

- 지정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심사·확인 내용에 대한 **선별 모니터링***을 실시하되, **이행관리 실태가 불량한 현장**은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

*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, 위험공정 자체 확인 등에 대한 지도·조언 실시

- 지정 건설업체 현장에서 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에 따른 **사망재해 발생 시 공단 확인 재개**